즉시 배포용: 9/16/2015 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ANDREW M. CUOMO 주지사의 미국 주택도시개발부(HUD)의 중복 혜택 결정에 관한 성명

"'중복 혜택' 정책을 면제한다는 미주택도시개발부의 오늘 결정은 초강력태풍 Sandy로 파손된 주택을 가진 주택 보유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FEMA 홍수 보험금을 받은 주택 보유주들은 가장 중요한 사항, 즉 다음 폭풍을 대비해서 더욱 더 잘 그리고 튼튼하게 복구하는 일에 계속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HUD에게 옳은 결정입니다. 이 정책이 극한 기후로 이미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뉴욕주민들에게 야기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부담을 해소해주자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 Castro 장관께 감사드립니다."

추가 정보:

지난 8월, Cuomo 주지사는 HUD의 Castro 장관에게 행정적 재량에 따라 중복 혜택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은 뉴욕시민들은 이 규제에 따라 (최근 법적 타협의 결과로 이제 FEMA 및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) NY Rising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많은 정부기관에게 행정적 부담도 야기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상당한 지연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.

현재까지, NY Rising 주택 복구 프로그램은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11,000명의 주택 보유주들에게 8억 달러 가까지 제공하였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은 Robert T. Stafford 재난구조 및 긴급 지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법규의 핵심 요소로서 Stafford법은 주택 보유주들이 같은 목적으로 다수의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뉴욕주에게 전체 NY Rising 지급금에서 연방 지원금 FEMA 및 미국홍수보험 프로그램 지원금)을 공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.

주택 보유주들의 평균 보조금은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공제한 약 60%에 해당하는 20,000달러입니다. 기타 필수 공제로는 잠재적으로 주택 보유주 담보 대출 회사에 대한 상환액, 포함, 중소기업청 태풍 복구 대출 상환액, 그리고 제3자 대출자, 양도자 및 보험사가 포함됩니다. 오늘 발표된 중복 혜택 면제의 결과, 뉴욕주는 폭풍 피해로 지원된

지급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당한 행정 비용(및 관련 비용 및 자원)을 경감 받게 될 것입니다. 본 정책의 일환으로 HUD는 중복 혜택에 해당하는 최고 20,000달러의 추가 홍수 보험금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로써 FEMA로부터 추가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은 4가주 중 3가구에 지급될 상환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